

의안번호	제 169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1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연월일 : 2007년 11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충북 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설립 (안 제2조)
-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 규정 (안제4조)
- 재단의 임원 및 사무국 설치 근거마련 (안 제5조, 제6조)
-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한 도비 및 시군비 출연 (안 제8조)
- 기금의 적정집행을 위한 주요사항 보고,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지도감독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13조)
- 관계법령 등 위반시 재단에 대한 제재 (안 제14조)

3. 조례안 전문 : 별첨

4. 관계법령발췌 : 별첨

5. 입법예고 결과 : 특별한 의견 없음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 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관의 준칙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등) ①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감사 등) ①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1호, 2호 생략 ”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과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가. 산학협동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 이하생략 ”